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1523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0년 5월 25일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교육감

1. 제안이유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는 2007년도에 제정되어 동 조례에 의한 감채기금의 존속기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, 2015.7.24.에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(법률13428호) 제4조 제2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현재 동 감채기금이 사실상 운용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조례로 남아 혼란을 줄 여지가 있어 폐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폐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[별첨 7]

○ 「지방회계법」 제19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

○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, [별첨 2])

다. 협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○ 입법예고(2020. 4. 20. ~ 5. 10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

○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○ 성별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○ 학생인권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○ 관계법규 : [별첨 7]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첨 2】

< 별지 제2호 서식 >

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제3조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‘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’ 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서울특별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

4. 작성자

-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주무관 유정아 (02-3999-324)

【별첨 3】

< 별지 제5호 서식 >

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(제14조 관련)		
의견제출자	제 출 의 건	조 치 내 용
	제출의견 없음	

관계법규

■ 「지방회계법」

[시행 2017. 7. 26.] [법률 제14839호, 2017. 7. 26., 타법개정]

제19조(결산상 잉여금의 처리)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·세출 결산상 잉여금(剩餘金)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을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.

1.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하여진 금액
2. 「지방재정법」 제50조에 따른 이월금

■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[시행 2020. 1. 1.] [법률 제16856호, 2019. 12. 31., 일부개정]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-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~ ④ 생략
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